

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

5-1-1

규정번호	5-1-1
제정일자	2008.3.1
최근개정	2025.12.1
개정차수	17차 개정
관리부서	학사학위운영센터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3조의 2 규정에 의거 명지전문대학(이하 “우리대학”이라 한다)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9.26.)

제 2 조 (과정명칭) 본 과정은 명지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과정”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 조 (설치학과) ① 학위과정은 우리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설치한다.
② 학위과정의 설치학과는 당해 학년도 설치승인 기준에 의하되, 학과 명칭은 총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제 4 조 (모집인원 및 학급편성) ① 당해연도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하고, 모집단위별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0% 이내로 모집한다.

② 학급편성은 40명 이하 단위로 별도학급으로 편성한다.

제 5 조 (산업체범위) ① 학위과정에 있어 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2.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및 방송국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
4.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5.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6. 직업군인
7. 상시 5인 이상 고용산업체(근로기준법 제11조)
8.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9.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10. 기타 관할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 6 조 (동일계열범위) 학위과정에 있어 동일계열범위는 승인 기준 안에서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7.24.)

제 2 장 위원회 설치

제 7 조 (위원회 구성) ① 학위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이하 “대학 운영위원회”라 한다) 및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편성위원회(이하 “학과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09.26.)

② 위원은 교수 및 관련 산업체 임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산업체 임직원의 구성비를 1/2 이상으로 하고, 대학 운영위원회는 학부장 또는 학과장 추천으로 학생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9.26.)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공심화과정 모집인원(인가신청) 조정 및 전형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1.06.21.)
2. 전공심화과정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1.)
3.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운영 점검에 관한 사항(호신설 2021.06.21.)
4. 전공심화과정 수요자 의견수렴 및 환류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1.06.21.)
5. 전공심화과정 운영진단(자체평가)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개정 2021.06.21.)
6. 기타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06.21.)

제 9 조 (위원회 운영) 대학 운영위원회 및 학과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09.26.)

제 3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 10 조 (수업연한) ① 학위과정의 설치학과별 수업연한은 2년제 학과의 경우 2년, 3년제 학과의 경우 1년으로 한다.

② 3년제 전문학사과정의 학과에서도 2년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 11 조 (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않는다.

제 4 장 학년·학기·수업·휴업일

제 12 조 (학년) 학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 일까지로 한다.

제 13 조 (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2학기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이전에 개강할 수 있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학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14 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수업일수를 충족시킬

명지전문대학 규정 / 5-1-1 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장의 승인을 얻어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 15 조 (수업)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 운영방법은 학칙 및 학사내규에 의한다.(개정 2022.09.26.)

제 16 조 (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개교기념일(3월 9일)

2. 일요일

3. 국정공휴일

4. 휴업일은 당해 연도 학사일정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총장이 임시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고, 임시휴업일이라도 불가피한 경우 수업할 수 있다.(신설 2024.7.24.)

② 하계 및 동계방학 기간은 매 연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장 입 학

제 17 조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도 개시 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 18 조 (입학자격) “산업체 경력 있는 과정”의 경우 전공하려는 분야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관련 분야에서의 재직경력이 1년(전년도 졸업자는 9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6.3.1.)

②“산업체 경력 없는 과정”의 경우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학과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여야 한다.(신설 2016.3.1.)

제 19 조 (입학지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입학원서를 작성한 후 총장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전형료를 첨부하여 입학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9.26.)

제20조(입학전형) 매 학년도 신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은 관할청장이 정하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

①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둘 수 있다.(신설 2025.12.1.)

② 모집단위별 정원의 일부를 특별전형을 통해 우선선발 할 수 있다.(신설 2025.12.1.)

제 21 조 (입학허가) ① 입학은 교무처장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16. 9.28., 2018.08.27.)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입학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2.09.26.)

1. 제출한 증빙서류의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 입학한 자(신설 2022.09.26.)

2. 총장이 정한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신설 2022.09.26.)

3.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입학지원 방법을 위반한 자(신설 2022.09.26.)

명지전문대학 규정 / 5-1-1 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

4. 기타 입학모집 요강 등 총장이 정한 입학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설 2022.09.26.)

제 21 조의 2 (재입학)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 해당 전공심화과정 모집인원 범위내에 여석이 있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총장의 허가로 재입학할 수 있다.(신설 2022.09.26., 개정 2024.7.24)

제 21 조의 3 (편입학) 타대학 전공심화과정 이수자가 편입학하고자 할 경우, 해당 전공심화과정의 모집인원 범위내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총장의 허가로 편입학 할 수 있다.(신설 2022.09.26.)

제 6 장 등록과 수강신청

제 22 조 (등록)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며,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내규에 의한다.(개정 2022.09.26.)

② <삭제(2022.09.26.)>

제 23 조 (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내규에 의한다.(개정 2022.09.26.)

② <삭제(2022.09.26.)>

제 7 장 교육과정 및 교과이수

제 24 조 (교육과정편성) ①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며, 전문학사과정의 교육과 연계된 전공심화교육에 중점을 두어 편성·운영한다.

② 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개정 2022.09.26.)

제 25 조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으로 구분한다.

1. 교양과정 : 공통교양과목, 계열교양과목으로 구분

2. 전공과정 : 기초 및 전공심화과목으로 구분

② 교양과정은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을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16.3.1., 개정 2018.02.26)

③ 교육과정 학점배정은 다음 표와 같다.(신설 2016.3.1., 개정 2018.08.27)

구분	편성(개설)학점			
	총 편성 (개설)학점	총 편성시수	교양교과 편성학점	전공교과 편성학점
1년제	36학점 이내	36시간 이내	6	30학점 이내
2년제	69학점 이내	69시간 이내	9	60학점 이내

명지전문대학 규정 / 5-1-1 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

제 26 조 (교과이수단위)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 학점으로 한다.

② 수업연한 1년제 과정의 경우 교양필수 교과목 3학점을 포함하여 교양 과정 6학점 이상, 전공과정은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3.1., 2018.02.26., 2018.08.27., 2025.3.31)

③ 수업연한 2년제 과정의 경우 교양필수 교과목 3학점을 포함하여 교양과정 9학점 이상, 전공과정은 4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3.1., 2018.02.26., 2018.08.27., 2025.3.31)

④ 학생은 매 학기 12학점 이상 18학점이하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최대 3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최종학기 이수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⑤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사내규에 의한다.

제 27 조 (학점인정) ① 전문학사과정의 졸업에 따른 취득 학점은 전공심화과정 입학 시 자격요건으로 인정한다.(개정 2018.08.27.)

② 전문대학과정 이외의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같은법률시행령, 같은법률시행규칙 등에 의하여 이수한 학점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정한다.

③ 제26조제2항 관련된 교과목을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학위과정의 졸업 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항 신설 2018.08.27.)

제 8 장 시험 및 성적

제 28 조 (평가시험) ① 모든 교과목은 매학기 중간과 기말에 정기시험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시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내규에 의한다.

제 29 조 (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성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내규에 의한다.

제 30 조 (학사경고) 당해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1.50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장 졸 업

제 31 조(졸업학점) 학위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은 전공심화과정 1년제 학과 24학점, 2년제 학과 55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08.27)

명지전문대학 규정 / 5-1-1 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

제 32 조 (졸업 및 학위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8.08.27)

제 33 조 (학위의 종류) 우리대학이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와 각 과정별 학위명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6. 9. 2)

제 34 조 (학위수여) ①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위는 학년도말에 수여한다. 다만, 졸업요건에 달하는 자가 추가로 생긴 때에는 학기말에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은 자 중에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2.16)

제 10 장 학적관리

제 35 조 (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입학한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와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③ 휴학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업연한 1년인 경우 1회, 2년인 경우 3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휴학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36 조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내규에 의한다.

제 37 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국내 다른 대학(교)에 이중 입학한 자
3.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못한 자
4.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자
5. 품행이 불량하거나 신체허약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 37조의2 (전과) 전공심화과정 등록생의 전과는 불허한다. 다만, 해당과정의 폐지로 인해 복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유사과정으로 전과할 수 있다.(신설 2022.09.26.)

제 38 조 (학칙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 학칙 및 학사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명지전문대학 규정 / 5-1-1 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칙) <2009.2.26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53> <생략>

<54> 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10호, 제14조②, 제2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관할청장”으로 하고, 제3조②, 제6조, 제7조②, 제9조, 제13조②, 제16조②, 제19조, 제20조, 제21조①, 제24조②, 제28조②, 제30조, 제35조①, 제37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55> - <102>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하되, 제33조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2일부터 시행하되, 제33조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명지전문대학 규정 / 5-1-1 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

이 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1조제1항)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5조, 제19조, 제21조제3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7조의2)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6조, 제16조제1항제4호, 제21조의2)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되,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6조제2항·제3항)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8조제2호, 제20조제1항·제2항)